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82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9월 5일(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9월 13일(화)

2. 제출사유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관광특구 민간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안 제2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라.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마. 민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 ~ 안 제7조)
- 바. 관광특구 법적 특례사항(안 제8조)

4.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71조 및 제74조

5. 검토보고

가. 제정 목적

- 이 조례 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2일 지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¹⁾ 지역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관광특구 지역과 특구의 대외적 명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관광특구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항에서 진흥계획 수립시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마포경찰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광특구 육성과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이러한 민간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사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검토하건데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의 규정으로 타당한 조문임.

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다. 종합 검토 의견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별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당초 원안에 없었던 범죄예방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광특구가 범죄에 특별히 더 노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사유나 통계적 자료 없이 범죄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보안등, CCTV 설치, 도로 및 미관 개선 등의 사업은 비단 관광특구에만 적용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기존에 형성된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범지역, 치안 불안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동 조문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9. 12. 3.>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4.5>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7.3.21>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8.3.27, 2020.12.22>

[제목개정 2011.4.5]